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170 호 2019. 4. 18.(목)

##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35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훈 령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57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 9
-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58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 ..... 16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73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3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74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37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479호[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li> <li>☞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35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6급	소계	123	98	3	8	2	12	
		행정	61	48	3	1	1	8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7	3					4
		공업	2	1				1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방송통신	1	1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7급	소계	189	153	4	13	3	16
		행정	81	62	3	1	3	1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	3				
		세무	9	9				
		전산	2	2				
		사회복지	9	6				3
		사서	3	3				
		속기	1			1		
		공업	4	4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의료기술	3				3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27	27				
		방송통신	4	4				
		운전	3	3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8급	소계	179	122	2	16	3	36
		행정	69	42	1			26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사서	3	3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7	7				
		전산	3	3				
		사회복지	14	6				8
		사서	3	3				
		공업	4	1			1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4				4	
		간호	5				5	
		환경	1	1				
		시설	20	20				
		방송통신	4	3				1
		운전	7	6			1	
		방재안전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9급	소계	72	47	2	1	0	22(4)
		행정	31	19				12(4)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4					4
		행정/사서	1	1				
		세무	2	2				
		사회복지	12	6				6
		사서	4	4				
		속기	1		1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보건	2	2				
		환경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별 정 직	계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수요 대응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여, 조직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07명(변동 없음)

나. 정원 조정 : 본청 환경 6급 → 공업/환경 6급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  
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57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복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 합계			448		
기획홍보실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9	행정7, 행정/임기제 행정2	
		8급	5	행정4, 행정/전산1	
9급	0				
주민소통실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1	
		6급	5	행정4, 행정/세무1	
		7급	7	행정4, 행정/사회복지1, 시설2	
		8급	4	행정3, 행정/보건1	
9급	1	행정1			
행정지원국	국 합계		158		
	총무과	계		35	
		정무직		1	구청장
		일반직	소계	33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7	행정5, 행정/공업1, 운전 1
			7급	13	행정9, 행정/시설1, 운전1, 공업2
			8급	9	행정5, 행정/임기제 행정1, 운전3
별정직		소계	1		
	6급상당	1	비서1		
행정지원국	계		22		
	일반직	소계	22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시설1, 행정/공업1	
		7급	9	행정6, 시설2, 공업1	
		8급	8	행정3, 행정/시설1, 행정/공업2, 방송통신1, 보건1	
9급	0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행정지원국	관광해양 개발과	계		10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해양수산1
			7급	3	행정1, 시설2
			8급	3	행정2, 해양수산1
9급	0				
행정지원국	도서관과	계		31	
		일반직	소계	31	
			5급	1	행정1
			6급	8	행정6, 행정/임기제 행정1, 행정/사서1,
			7급	6	행정2, 사서3, 행정/사서1
			8급	10	행정1, 행정/임기제 행정1, 사서3, 행정/사서3, 전산1, 공업1,
9급	6	행정1, 행정/사서1, 사서4			
행정지원국	징수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세무3
			7급	5	행정1, 행정/세무1, 세무3
			8급	3	행정/세무2, 세무1
9급	2	행정1, 행정/세무1			
행정지원국	부과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1
			6급	4	행정/세무2, 세무2
			7급	7	행정/세무1, 세무6
			8급	6	세무6
9급	2	세무2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계		26	
		일반직	소계	26	
			5급	1	시설1
			6급	4	행정2, 시설2
			7급	8	행정4, 행정/시설1, 시설3
			8급	6	행정3, 시설3
9급	7	행정5, 시설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경제국	국 합계		130		
	복지지원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사회복지1
			7급	4	행정1, 사회복지2, 운전1
			8급	8	행정1,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5
9급	3	행정1, 사회복지2			
복지경제국	사회복지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4	행정1, 사회복지2, 시설1
			8급	4	행정2, 행정/시설1, 사회복지1
9급	3	사회복지3			
복지경제국	가족정책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6	행정2, 행정/사회복지2, 사회복지2
			8급	4	행정1, 행정/사회복지3
9급	4	행정3, 사회복지1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계	19		
		일반직	소계	19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8	행정7, 공업1
			8급	4	행정4
9급	1	행정1			
복지경제국	농수산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5	행정1, 행정/농업/해양수산1, 농업2, 해양수산1
			7급	9	행정1, 행정/녹지1, 농업3, 농업/수의/해양수산1, 수의1, 해양수산1, 시설/해양수산1
			8급	4	행정/농업1, 농업/해양수산1, 해양수산1, 시설1
9급	1	농업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복지경제국	환경위생과	계		20	
		일반직	소계	20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행정/환경1, 보건2, <b>공업/환경1</b>
			7급	8	행정1, 공업/환경1, 보건4, 환경2
			8급	4	행정1, 보건1, 환경1, 시설1
		9급	3	보건2, 환경1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계		16	
		일반직	소계	16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환경1, 운전1
			7급	4	행정1, 행정/환경1, 환경1, 운전1
			8급	6	행정2, 행정/환경1, 운전3
		9급	1	행정1	
안전건설국	국 합계			122	
	안전정보과	계		30	
		일반직	소계	30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시설1, 전산1, 방송통신1
			7급	11	행정3, 전산2, 시설2, 방송통신4
		8급	9	행정2, 행정/시설1, 전산2, 시설1, 방송통신2, 임기제방재안전1	
	9급	3	방송통신1, 행정/임기제 행정2		
	안전건설국	건설과	계		25
일반직			소계	25	
			5급	1	시설1
			6급	6	행정2, 시설3, 공업1
			7급	8	행정1, 시설5, 공업/환경1, 전기운영1
			8급	6	행정1, 행정/시설1, 시설4
9급			4	행정1, 공업1, 시설2	
안전건설국	도시과	계		18	
		일반직	소계	18	
			5급	1	행정/시설1
			6급	4	시설3, 시설/임기제 시설1
			7급	6	행정2, 행정/시설1, 시설2, 시설/임기제 시설1
			8급	6	행정/시설1, 시설5
		9급	1	시설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녹지1
			6급	3	행정/녹지1, 행정/녹지/시설1, 녹지1
			7급	6	행정1, 녹지4, 농림운영1
			8급	2	녹지2
9급	2	녹지2			
안전건설국	교통행정과	계		14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5	행정4, 시설1
			8급	4	행정3, 행정/세무1
9급	1	행정1			
안전건설국	건축주택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시설1
			6급	5	행정1, 시설4
			7급	7	행정1, 시설6
			8급	7	행정2, 시설5
9급	1	시설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 607명(변동 없음)
- 나. 정원 조정 : 본청 환경 6급 → 공업·환경 6급

울산광역시 복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58호

## 울산광역시 복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울산광역시 복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복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소관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울산광역시복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 제2장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리체계

제3조(보안책무) ①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보유한 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점검·감사·교육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①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본청: 민원지적과장
2. 소속기관: 보건행정과장, 동장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의 보안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마련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감사 및 교육
4. 공간정보의 보안진단 및 현황 조사
5. 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6. 그 밖에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본청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공간정보심의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간정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세부분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공간정보의 공개여부 및 공개 활용에 따른 보안대책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대책
5.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보안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 제3장 공간정보의 분류기준 및 관리

**제7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며,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비공개 공간정보

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나.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이하 “공개제한 공간정보”이라 한다)

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

다. 그 밖에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

3. 공개 공간정보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

② 공간정보를 분류할 때에는 세부 속성(칼럼)별로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최고의 속성을 시스템의 대표 속성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의 취급)**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

②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중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누설·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관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보관책임자 정: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2. 보관책임자 부: 소관업무 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제9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가. 본청: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 나. 소속기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및 동장
  2. 데이터베이스 보관 시설에 대한 출입통제 등 외부로부터 위해방지
  3. 공간정보자료(원시자료 및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성과물 포함)에 대한 접근 권한 구분
    - 가. 부서 및 사용자별 아이디(ID)·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의 제한
    -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출력·갱신 등으로 제한
    -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전 항목 등으로 구분
    -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안관리책임자의 사전허가 후 이용
  4.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 자료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5.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6.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복제본 관리대장 비치
- ② 전자매체에 수록된 공간정보 자료는 열람·전송·출력 등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시스템을 구축·관리한다.

## 제4장 공간정보 보호대책

**제10조(공간정보유통망 관리)**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위·변조,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간정보유통망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2. 방화벽 등 침입방지 및 감시시스템 설치·운영

- 3.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 유통 시 암호자재 사용 등 「보안업무규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
- 4. 인터넷 등 외부망과 분리설치 및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마련
- 5. 공간정보 유통망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점검·확인

**제11조(공간정보의 복제·출력 등 제한)**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없다.

-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복제·관리하는 경우
  - 2. 비공개 공간정보는 관리기관 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
  - 3.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보안담당관의 허가를 받았을 때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복제·출력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을 적색으로 표시한다.

이 자료는 관리책임자의 허가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음

③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예고문 부여 등 보호대책을 마련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복제·출력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복제 시에는 공개 공간정보와 구분하여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다.

**제12조(공간정보의 국외반출 금지)**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

-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경우
  - 2. 정부 또는 울산광역시, 구를 대표하여 외국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공간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다음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출입 인가자를 미리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 4. 출입구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 5. 비인가 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준비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 6.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공간정보의 외주용역)** 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외주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계약서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호 의무와 법 제38조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
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3.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
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
5. 그 밖에 보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의 외주 용역 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간정보를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공간정보 수집·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인 보안관리)** ① 구청장은 외국인을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서약집행
2. 계약서에 기밀누설·유출 시 해고 및 손해 배상책임 명시
3. 비공개 등 중요 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차단 대책

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보안상 위험하고 유해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즉시 시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반출 또는 파기할 수 있도록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절차·시행책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장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및 절차

**제17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학술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기관은 미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
2. 소속기관·단체 및 직책
3. 사용목적 및 타당성
4. 활용 후 관리대책

③ 제2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인수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비공개 공간정보의 공개 요건)** ① 비공개 공간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과 공개 목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을 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공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재분류)** ① 구청장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②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는 「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재분류한다.

## 제6장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보안사고 조치

**제20조(보안지도 및 점검)** ① 구청장은 공간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 보안점검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계획 및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공간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를 새로 취급하게 되는 사람과 전출·퇴직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소속부서장 주관으로 실시한다.

**제22조(보안사고 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 일시·장소·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시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

2. 법 제37조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무단 이용

- 3. 법 제38조의 비밀의 누설·도용
- 4. 공간정보유통망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 5. 그 밖에 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안사고에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23조(준용)** ① 공간정보 이외의 항공사진, 위성영상 및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에 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 1.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2.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4.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 5.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 6. 그 밖에 공간정보 보안업무 관련 규정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제7조제1항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 자료(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법 제2조제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올림픽 등 국제행사 지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행사기간 동안 해상도 25cm보다 정밀한 항공사진을 일반인에게 제공 또는 판매할 경우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정밀 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자료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보다 정밀한 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다만, 해상도 50cm보다 정밀한 위성영상 제공 또는 판매 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
수치지도	비공개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 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군사지도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다만, 항공기·선박의 안전항행 등에 필요한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지도에 표기 ○1:1,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과 표고점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 등을 통해 좌표와 1:5,000 축척 이상 지도의 등고선·표고값 표시 불가
해양공간 정보	비공개	○접경해역 수심 자료 ○좌표가 표기되어 있고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개 제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120m보다 정밀한 수심 자료 ※다만, 공개제한 대상 수심이라도 항해안전, 해양레저, 해양공간정보 산업화 등에 필수적인 해역의 수심은 관계기관 협의 후 공개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공 개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수심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해저 영상자료 ○해도, 전자해도 등
기 타 공간정보	비공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공 개 제한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해상도가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3차원 공간정보 ※다만, 해상도 90m보다 정밀하고 3차원 좌표가 포함된 공간정보 중 도로 지역은 보안성 검토를 거쳐 국가안보상 위해 요인이 없는 경우 공개
	공 개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가 90m보다 낮은 입체영상자료 ※토양·지질·지번도, 도시·도로 건설계획도 등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을 제외한 도로명주소 안내도



[별표 2]

##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16조 관련)

### 1. 목 적

이 계획은 전시사변, 폭동, 천재지변,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울산광역시북구가 보관·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를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함으로써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범위

울산광역시 북구가 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있는 공간정보

### 3. 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

- 가. 전쟁, 사변 또는 폭동의 발발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을 현 보관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게 된 때
- 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공간정보의 누설, 전파, 분실, 도난, 손실 또는 파괴의 우려가 있을 때
- 다.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 공격 또는 침투로 공간정보 등을 탈취할 우려가 있을 때
- 라. 그 밖에 현 보관 장소에 계속 보관할 수 없는 불가피한 또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한 때

### 4. 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등

가. 일과 중일 때의 반출절차

#### (1) 상황파악 및 반출명령

보안담당관은 제3호의 상황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파악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의 반출명령을 받아 보관책임자에게 공개제한 및 비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 (2) 보관책임자의 반출조치

(가) 공간정보 등 반출요원 소집 및 반출지시

반출요원은 보관 부책임자 및 그 소속직원이 된다.

## (나) 공간정보 등의 보관용기 개방과 인출작업

반출요원은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 (다) 반출

반출요원은 승강기 또는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 (라)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각 반출요원 또는 지명 받은 보조요원이 행한다.

## 나. 일과 후 및 공휴일의 반출절차

## (1) 상황과악 및 반출명령

당직책임자는 제3호에 따른 반출시기임이 과악되었을 때에는 즉각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 후 보안담당관의 명에 의하여 비밀 등에 대한 반출을 명한다.

## (2) 비상소집 조치(예비군 포함)

당직책임자는 판단된 상황에 따라 전직원 또는 예비군에 대한 비상소집 조치를 취한다.

## (3) 반출조치

## (가) 안전함 개방,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 등 확인

당직책임자는 당직실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함을 열어 각 실·국·과 보관용기 열쇠 및 다이얼번호를 확인한다.

## (나) 인출조 편성 및 인출지시

당직책임자는 당직자(청경 포함)로 구성된 인원으로 각 실·과별로 분담한 인출조를 편성하여 해당되는 열쇠와 다이얼번호를 인계하여 인출토록 지시한다.

## (다) 인출조의 인출작업

분담 받은 해당 실·과의 공간정보 등 보관용기를 개방하여 공간정보 등을 인출한 후 이를 비상반출낭에 넣어 반출준비를 완료한다.

## (라) 반출

인출 또는 인출준비 완료와 동시에 비상계단을 통하여 공간정보 등을 반출지까지 가장 신속하고도 안전한 방법으로 반출한다.

## (마) 반출시 호위

반출시 호위는 우선 확보된 인출조원이 이를 하되, 비상 소집되어 도착된 예비군 또는 직원이 이를 호위한다.

## 다. 반출장소

- (1) 반출장소는 보안담당관이 이를 작성하여 안전함 내부에 비치한다.
- (2) 상황에 따라 보안담당관은 안전반출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라. 파기절차 및 장소

- (1) 적, 무장공비, 폭도 기타 불순분자의 포위공격 또는 침투로 인하여 공간정보 등의 안전반출이 도저히 불가능하거나 공간정보 등을 탈취할 긴박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때는 긴급 파기할 수 있다.
- (2) 파기절차는 반출절차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준하여 시행하고, 파기장소는 소각장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의 진척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 목록 관리대장(제7조제2항관련)

기관구분	시도구분	관리기관	관리부서	관리담당자		목록작성일	시스템명칭	레이어명		정보의주요내용(레이어설명)	구축범위	데이터구축형태	데이터유형		최초생성일자	갱신주기	최종갱신일자	공개구분	비용			비공개/공개제한근거	비고		
				성명	연락처			이메일	한글				영문	벡터					래스터	구분	금액			정수근거	

## ※ 공간정보 목록 작성방법

구분	항 목	내 용	비 고
담당자 기본 정보	기관구분	중앙부처/광역시도/지초지자체/산하기관(청)	
	관리기관	예) 울산광역시, 울산동구, 산림청 등	
	관리부서	예) 도시계획과, 민원지적과 등	
	담당자 성명	공간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공간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공간자료를 관리하는 담당자 이메일	
레이어 기본 정보	목록 작성일	공간정보 목록 조사서 작성일자	
	시스템명칭	해당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명	
	레이어명칭(한글)	공간정보 한글 명칭	
	레이어명칭(영문)	공간정보 영문 명칭	
	레이어 설명	해당공간정보의 설명 예)수치지형도2.0의 행정경계	
	구축범위	레이어의구축범위 예)읍면동,시군구,시도,전국,임의영역,기타	
레이어 세부 정보	데이터형태	공간데이터의 형태 : 레스터 or 벡터	
	데이터유형	▶ 레스터:항공사진,위성사진,정사영상,기타 ▶ 벡터:폴리곤,라인스트링,포인트 등	
	최초생성일	레이어 최초 구축일	
	갱신주기	데이터 갱신주기(년,반기,분기,월,주,일,실시간)	
	최종갱신일자	조사서 작성일 기준으로 최종 갱신일	
	공개구분	데이터공개구분 예)공개, 공개제한, 비공개	
	비공개/공개제한 사유	해당정보의 비공개/공개제한 사유	
비용	데이터 제공에 따른 유무상 여부		





[별지 제4호서식]

##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검토서(제17조제2항관련)

신 청 자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속기관 (단 체)		직 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보안 및 관리대책				
검토자		제공여부	여	부
제공내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조건				
<p>「울산광역시북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요청사항을 위와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안담당관 직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p> <p>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p>				



[별지 제5호서식]

##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제17조제4항관련)

신 청 자 (신청기관) 신원사항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주 소					
	소속기관 (단 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관리대책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제공기간	~	반납여부		반납일	
	보안대책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목적 외  
에 사용할 경우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산출물 등은 제공기관 환수

                  년      월      일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의 장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북구청장 귀하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국가정보원의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 및 「행정안전부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보안책임”을 “보안책무”로 하여 보안의무 강화(제3조)
- 공간정보 분임보안담당관을 보안담당관으로 책무 상향(제4조)
- 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임무에 ‘공간정보심의위원회 관리’ 조항 신설(제5조)
- 보안담당관에 대한 임명·교체 내용 상위기관 통보 조항 삭제(현행 제6조)
- 비공개·공개제한·공개 공간정보 분류기준을 본문에 명시(제7조)
- 보호구역 내 주요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세부적인 조항 명시(제13조)
  - 비인가카메라·휴대폰·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 공간정보 新산업 창출, 국제행사 등을 항공사진 해상도 완화(별표1)
  - 해상도 25cm(50cm → 25cm완화) 항공사진 공개
- 국가기간시설에 대하여 항공기, 선박 안전운항을 고려 보안성 검토 후 지도표기
- 해양공간정보 보안기준 신설(별표1)
  - 비공개에 정보에 접경해역 수심,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인근해역 또는 접경해역 내 해상도 30m보다 정밀한 해저 영상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73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길 38 외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1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1037-1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 29길15	2019-04-18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2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266-5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산 업2길 21	2019-04-18	중산 산업단지 내부도로라 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15-02-02
3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물류2단 지 5B 7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 통1로 3	2019-04-18	진장유통로에서 분기된 도로로 진장유통로와 연계성을 반영	2016-07-28
4	울산광역시 북구	신명동 223-2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1길 74	2019-04-18	예전 지명인 대안 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5	울산광역시 북구	신현동 538 외 1(552)	울산광역시 북구	장등길 38	2019-04-18	기존 자연마을인 장등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08-09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 구 8B 7-1L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2길 18	2019-04-18	옛 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	2004-12-27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31B 6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24 길 2	2019-04-18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62B 4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36 길 4	2019-04-18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74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장등길 38	신현동 538	2019. 4. 18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4. 18.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9-479호

##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복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8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배송자 시설기준 및 협약기간 등 운영상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며,
- 공급자 중 가공업체 실사 거부 및 시정 미이행시 공급을 제한하며, 지역 농수산물 납품 우선순위 및 수산물 방사능검사 의무화 등 식재료 안전성 강화코자 함

#### 2.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수당지급 신설(안 제10조제8항)

-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수당 지급 신설

나. 배송자 선정 시설기준 및 선정조건, 협약기간 변경(안 제15조 제1항의 「별표1」, 제3항)

- 배송자 선정 시설기준 및 선정기준 현 실정에 맞게 「별표1」 개정
- 배송자 배송기간 개정(학년제 → 회계년도/ 2년 → 3년이내)

#### 다. 공급자(가공품) 실사 거부 등 공급 제한 신설(안 제16조제4항)

- 공급자(가공품) 실사 거부 및 시정요구 미이행시 공급 제한 신설

#### 라. 공급자 중 지역 농수산물 납품 우선순위 및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의무화 신설(안 제16조제5항제1호 및 「별표2」, 제4호)

- 공급자 중 지역 농수산물 납품 우선순위 및 「별표2」 신설
- 수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사능검사 의무화 신설

### 3. 근거법규

가. 「학교급식법」

나.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8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농수산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처 : 우 44248/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연암동) 농수산과  
(전화번호 : 052-241-8061, 팩스번호 : 052-241-8059)

### 6.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제3항 중 “학교 학년제의 기간에 맞추어 2년으로 하되”를 “회계년도와 맞추어 3년 이내로 하되”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급식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를 “급식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실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5항제1호 중 “공급자가 직접 생산한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를 “공급자가 직접 생산한 품목을 납품하여야 하며, 지역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우선 순위는 별표 2와 같다”로 한다.

제16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산물은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시설기준 및 선정조건(제15조제1항 관련)

### ◆ 시설기준 및 선정조건

내 용	비고
① 배송 규모 및 규정에 적합한 차량온도기록계 비치된 냉장 및 냉동겸용 탑차(1~2차 배송, 가금류 등),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가능한 업체(단체)여야 한다. ③ 식재료 사고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④ 기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배송 의무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2]

## 지역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우선순위(제16조제5항 관련)

## ◆ 납품 우선순위

내 용	비고
<p>지역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결품 등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의 범위는 농가는 북구, 어가는 수산생물의 회유성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해역으로 한다.</li> </ul> </li> <li>2. 1호외는 급식지원센터 정책분과위원회 결정으로 한다.</li> </ol>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 ~⑦ (생략) &lt;신설&gt;</p>	<p>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①~⑦ (현행과 같음) ⑧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생략)</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lt;별표 1&gt; 시설기준 및 선정조건(제15조제1항 관련)</p> <p>1. 시설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시설 종류</th> <th style="width: 33%;">대 수</th> <th style="width: 33%;">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냉장, 냉동 겸용 탑차</td> <td>총 5대 이상</td> <td>차량 온도기록계</td> </tr> </tbody> </table> <p>2. 선정조건</p> <p>(1) 탑차의 운전사는 반드시 1명 이상 배송업체의 정규직이어야 한다.</p> <p>(2) 급식이나 배송 관련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p> </div> <p>② (생략) ③ 배송자 선정 시에 협약기간은 <u>학교 학년제의 기간에 맞추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u></p>	시설 종류	대 수	비고	냉장, 냉동 겸용 탑차	총 5대 이상	차량 온도기록계	<p>제15조(배송자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현행과 같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lt;별표 1&gt; 시설기준 및 선정조건(제15조제1항 관련)</p> <p>◆ 시설기준 및 선정조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80%;">내 용</th> <th style="width: 2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① 배송 규모 및 규정에 적합한 차량 온도기록계 비치된 냉장 및 냉동겸용 탑차(1~2차 배송, 가급류 등),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td> <td></td> </tr> <tr> <td>②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가능한 업체(단체)여야 한다.</td> <td></td> </tr> <tr> <td>③ 식재료 사고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td> <td></td> </tr> <tr> <td>④ 기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배송 의무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td> <td></td> </tr> </tbody> </table> </div> <p>② (현행과 같음) ③ ----- <u>회계년도에 맞추어 3년 이내로 하되,</u> ----- -----.</p>	내 용	비고	① 배송 규모 및 규정에 적합한 차량 온도기록계 비치된 냉장 및 냉동겸용 탑차(1~2차 배송, 가급류 등),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가능한 업체(단체)여야 한다.		③ 식재료 사고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④ 기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배송 의무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종류	대 수	비고															
냉장, 냉동 겸용 탑차	총 5대 이상	차량 온도기록계															
내 용	비고																
① 배송 규모 및 규정에 적합한 차량 온도기록계 비치된 냉장 및 냉동겸용 탑차(1~2차 배송, 가급류 등), 시설,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등록 가능한 업체(단체)여야 한다.																	
③ 식재료 사고 등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④ 기타 사업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배송 의무 및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공급자의 의무)</p> <p>①~③ (생략)</p> <p>④ 공급자는 식재료의 원재료와 첨가물 등이 상세히 적힌 “<u>품목제조보고서</u>”에 근거하여 <u>급식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u></p> <p>⑤ (생략)</p> <p>1. <u>공급자가 직접 생산한 품목을 납품하여야 한다.</u></p> <p>&lt;신설&gt;</p> <p>2. (생략)</p> <p>&lt;신설&gt;</p> <p>3. (생략)</p>	<p>제16조(공급자의 의무)</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p> <p><u>급식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실사를 거부하거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1. <u>공급자가 직접 생산한 품목을 납품하여야 하며, 지역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우선 순위는 별표2와 같다.</u></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lt;별표 2&gt;</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우선순위 (제16조제5항 관련)</p> <p>◆ 납품 우선순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내 용</th> <th style="text-align: center;">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지역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결품 등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지역의 범위는 농가는 북구, 어가는 수산생물의 회유성을 감안하여 울산시 관내 해역으로 한다.                      2. 1호외는 급식지원센터 정책분과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td> <td style="width: 15%;"></td> </tr> </tbody> </table> </div> <p>2. (현행과 같음)</p> <p>3. <u>수산물은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내 용	비고	지역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결품 등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지역의 범위는 농가는 북구, 어가는 수산생물의 회유성을 감안하여 울산시 관내 해역으로 한다. 2. 1호외는 급식지원센터 정책분과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내 용	비고				
지역 농수산물 학교급식 납품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으로 한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결품 등에 대비한 안정적 공급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지역의 범위는 농가는 북구, 어가는 수산생물의 회유성을 감안하여 울산시 관내 해역으로 한다. 2. 1호외는 급식지원센터 정책분과위원회 결정으로 한다.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급식지원센터 운영),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제1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울산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1조(수당 등) ① 구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 표】<14.12.22> 위원회 참석수당(제11조 관련)

구 분	단위	지급금액	초과기준
위원회	일당	•기 본 : 70,000원 •초 과 : 30,000원	• 회의시작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이버위원회	회당	•기 본 : 50,000원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제 출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